

국민건강보

급부·부담일람표 (2021. 4. 1 현재)

ハンゲル

A 급부

A 1 본인 부담금의 비율

구 분	비 율	
6 세 미만	20%	
6 세 이상 70세 미만	30%	
70세 이상 75세 미만	20%	30% 에 해당하지 않는 자
	30%	은퇴이전 수준의 소득자(아래 A 2 ② 참조)

A 2 고액 요양비의 본인부담금 한도액(월 금액)

① 70세 미만

구 분	국민보험세대 전체	
상위소득자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901만엔을 초과하는 세대	252,600엔 + (의료비 - 842,000) × 1%
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600만엔을 초과하고 901만엔 이하의 세대	167,400엔 + (의료비 - 558,000) × 1%
일반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210만엔을 초과하고 600만엔 이하의 세대	80,100엔 + (의료비 - 267,000) × 1%
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210만엔 이하의 세대	57,600엔
저소득자	주민세비과세 세대	35,400엔

② 70세 이상 75세 미만

구 분	개인단위 (외래진료만해당)	세대단위 (입원포함)
현역만해당	과세소득 690만엔 이상	252,600엔 + (의료비 - 842,000) × 1%
	과세소득 380만엔 이상	167,400엔 + (의료비 - 558,000) × 1%
	과세소득 145만엔 이상	80,100엔 + (의료비 - 267,000) × 1%
일반	과세소득 145만엔 미만	18,000엔 / 57,600엔
저소득자	Ⅱ 시, 정, 촌민세비과세 세대	8,000엔 / 24,600엔
	Ⅰ 시, 정, 촌민세비과세 세대 ※ 1	8,000엔 / 15,000엔

※1 시, 정, 촌민세비과세 세대 중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대.

A 3 출산육아 일시금의 지급액

40만 4 천엔

(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42만엔)

A 4 장례비의 지급액

5 만엔

B 부담

B 1 보험료(세금)의 액수

	①응능(應能)비율		②응익(應益)비율	
	소득비율	자산비율	피보험자 균등비율	세대별 평등비율
의료보험분	%	%	엔	엔
후기고령자※1 지원분	%	%	엔	엔
간병보험분	%	%	엔	엔

※1 고령자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칭함.

B 2 경감 비율

%	%	%
---	---	---

○경감제도

경감비율	경감기준
70%경감	총소득금액(세대주+피보험자)≤43만엔※
50%경감	총소득금액(세대주+피보험자) ≤43만엔※+28.5만엔×피보험자수
20%경감	총소득금액(세대주+피보험자)≤43만엔※+52만엔×피보험자수

※ 급여 또는 연금소득자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43만엔+10만엔×(급여 또는 연금소득자의 인원수-1)

B 3 특정건강진단검사의 본인부담금액

엔
